

## 육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 제외 건의

건의처 : 농림수산부 유통관리과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제정경제원 생활물가관리과  
 통상사업부 무역과  
 행정쇄신위원회

1. 행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시는 관계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원료육 원산지 표시제도는 값싼 농산물 및 가공식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부정유통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만 표시토록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3. 당협회 회원사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여러가지 원료육(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육, 오리육 등)을 혼합 또는 그 배합비를 수시로 다변화하는 동시에 원료의 가격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배합비를 변경사용하여 믹서, 혼합, 염지, 훈연 또는 여러가지 첨가제를 첨가하여 특색있는 육가공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Know-How가 있는 것입니다.

4. 육가공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사례는 Codex규격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그 성질

(Nature)이 바뀌는 가공이 행해지면 그 가공이 행하여진 국가를 원산지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타 해외선진 사례를 보더라도 원산지별 함량(%)을 표기하는 나라는 없으며 원료육 투입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규제 수단으로 간주되어 통상마찰 유발 가능성이 큽니다.

5. 금번 농림수산부 고시는 현재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온 정부의 식품행정쇄신대책과 상반되며 '95.8월 확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해외 선진국과 같이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서 원재료명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산지 표시요령에서는 원재료명외에 원산지별 원료육함량(%)까지 추가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로 인한 수시변경되는 원료육 투입에 따른 포장변경 등으로 막대한 비용손실 및 WTO체제하에서의 국내업체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6. 특히 육가공 원료중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돼지고기는 사용업체가 임의로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되는 물량을 정부에서 Quota를 정하여 국제입찰을 하여 입찰단가 순위로 몇개국분이 수입되는 것입니다. 이 수입된 원료육은 국내에서 수시로 경매하니 업체들은 수입원료육을 재정형편상 월별로 경락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수입원료육을 업체가 자위로 선택할 수 없어 원산지 표시는 수입육 구입사 용시마다 변경하게 됩니다.

7. 또한 육가공제품에 투입한 원료전체가 수입산인 경우에는 부득이 수입산으로 표시되어야 하겠지만 육가공제품의 대부분이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사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들 가공품에 여러나라의 원산지를 나열 표시하게 됨으로써 원산지가 혼합된 국내산 모두 수입식품으로 오인되어 오히려 국내 육가공제품의 불신을 초래하여 국내원료육 소비까지도 위축됩니다.

8. 따라서 수입자유화된 값싼 외국 육가공제품만 선호하게 되어 수입식품의 국내시장 잠식은 가속화되는 반면 원산지 표시 등에 따른 막대한 경비(약 225억원)만 가중된 국산 육가공제품의 수출은 엄두도 들 수 없을 뿐더러 국내 육가공산업은 후퇴됩니다.

9.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농림수산부 유통관리과를 위시하여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니 국내 육가공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육가공제품이 제외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육가공품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지정에 관한 참고자료 1부

**육가공품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지정에 관한  
참고자료**

**1. 법적 근거**

- 가.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 나.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다.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1호 (1995.9.25 :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 처리요령)

**2. 제품에 원산지 표시시의 손실액 추정**

1) “A”사의 경우 예시

- 가) 인쇄동판비 : 30만원×1개사 200품목×8도 인쇄=4억8천만원
- 나) 필름제작비 : 100만원×1개사 200품목×년 2.7회=5억4천만원
- 다) 기존포장지 사장비 : 8만원×200품목×20Roll×2.7회=8억6천만원
- 라) 특정폐지 처리비 : 8억6천만원의 20%=1억7천2백만원
- 합 계 : 20억5천2백만원

2) 손실추정액

- 가) 대회사 : 20억5천2백만원×5개사=102억6천만원
- 나) 기타사 : 20억5천2백만원× 1/2×12개사=123억1천2백만원
- 합 계 : 225억8천6백만원

**3. 외국에서의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예**

가. Codex 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 규격(전세계 적용 규격)

<Codex Stan 1 - 1985, Rev 1 - 1991>의 4.5원산지 표시 (Country of Origin)에서 4.5.2 어떤 식품이 다른 나라에서 그의 성질이 바뀌는 가공이 행하여졌다면, 이와 같은 가공이 행하여진 나라를 본 규격상 원산지로 보아야 한다.

(When a food under goes processing in a second country

which changes its natures, the country in which the processing in performed shall considered to be the country of origin for the purpose of labelling.)

나. 미국연방거래 위원회(FTC법 제5조)  
원료(부품)를 수입하여 미국내에서 제조·가공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 당해 수입원료(부품)가 가공과정 이후 기능 혹은 외관상 원료(부품) 자체의 특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원료(부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판결례)

#### 4. 육가공제품의 원료육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복잡성

가. 많은 원료육 중 국제가격이 수시로 변화되나 국가에서 여러나라산 원료육을 수시 수입하여 경매하거나 또는 개방시대에는 여러나라 중 가장 저가인 원료육을 수입 사용하게 됨.

- 1) 예1(쇠고기) : 호주산, 미국산, NZ산, 캐나다산, 기타 국산 등에서 선택
- 2) 예2(돼지고기) : 국내산, 덴마크산, 대만산, 미국산, 캐나다산, 기타 국산 등에서 선택
- 3) 예3(가금육) : 국내산, 중국산, 미국산, 영국산, 태국산, 기타 국산 등에서 선택
- 4) 예4(기타연육류) : SURIMI명태 등은 세계 무역 교류국에서 수입

나. 혼합육가공제품은 국내외의 원료육 가격에 따라 원료육을 수시로 대처, 변경 사용할 수 있음. (비율은 가상치)

- 1) 예 1 : 돼지고기 90% : 돼지고기

50%, 칠면조고기 20%, 닭고기 20% 등

- 2) 예 2 : 닭고기 90% : 닭고기 40%, 칠면조고기 30%, 오리고기 20% 등

- 3) 예 3 : 혼합제품

① 쇠고기 20%, 돼지고기 50%, 닭고기 20%, 칠면조고기 10% 등

② 돼지고기 40%, 칠면조고기 20%, 닭고기 20%, SURIMI명태 10% 등

다. 현고시된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른 문제점

- 1) 표시사항의 복잡성 : 예 3) 혼합제품
- ② (단, 3개국이상 수입분 사용시 “수입산”으로 표시가능)

· 돼지고기 40% : (국산 50%, 덴마크산 20%, 캐나다산 20%, 미국산 10%)

· 칠면조고기 20% : (미국산 50%, 영국산 50%)

· 닭고기 10% : (국내산 50%, 태국산 25%, 미국산 25%)

· SURIMI명태 10% : (국내산 50%, 미국산 50%)

- 2) 1)항에 의거 표시시 문제점

① 국산 및 수입국의 원료육 가격과 재고량에 따라 국산, 수입산 원료육 투입의 수시변경

② 원료육 확보는 재정상 월별로 확보하며 연중사용량의 대량확보는 불가능

③ “다”항에 의거 육가공제품의 포장지에 원산지표시는 복잡해지며 지면에 협소하고 표시 디자인도 조잡해짐

④ 따라서 포장지 변경은 수시로 변경되고 많게는 월별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